

수원지방법원 2021. 11. 18 선고 2021나503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송

담당변호사 박지혜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진

변 론 종 결 2021. 10. 28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8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. 12. 11. 선고 2019가단59224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, 피고는 원고들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7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1)

주위적으로, 피고와 주식회사 E 사이에 별지2) 목록 제1, 2, 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0. 30. 체결한 매매계약을 57,630,13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들에게 57,630,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주문 제2항과 같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(주위적)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사안의 개요

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를 인용한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주위적으로,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합의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최종약정 당일인 2017. 9. 13. 소외 회사에게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서 이 사건 최종합의금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7. 11. 13.까지 지급받기로 정하는 한편, 위 최종합의금 지급에 총당될 우선적 재원을 (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처분을 전제로 한) PF자금으로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최종약정 체결 경위나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최종약정을 통하여,

① 원고들이 (소외 회사와의 매매계약상 반대급부 중 일부인 이 사건 최종합의금을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점에서) 매도인으로서 동시이행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선이행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소외 회사로 하여금 조기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당시 추진하였던 개발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, ② 소외 회사는 그 대가로 원고들에게 향후 이 사건 최종합의금 50,000,000원의 추가수익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.

그렇다면 2017. 10. 30.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최종약정 당시 예정한 소외 회사의 후속처분(자금확보책)의 일환이거나 원고들이 위 초과수익에 대한 대가로 이미 감수한 위험일 따름이라고 판단된다.

나. 게다가 갑 제5, 9 내지 13호증(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종합의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[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별소{부산지방법원 2019가합(본소), 2020가합51712(반소)} 변론 과정에 이를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고, 원고 B이 소외 회사 대표이사 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복수의 진술이 확인되었다]이 인정된다. 이로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여전히 원고들이 구하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.

다. 이상을 종합하면,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, 다만 피고는, 원고들이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채무인수 약정을 승낙하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해당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따라, 원고들에게 이 사건 최종합의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. 7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들이 이 사건 최종합의금 50,000,000원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
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,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국현,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

별지

부 동 산 목 록

1. 평택시 K 대 71㎡
2. 평택시 L 대 307㎡
3. 평택시 M, K, L 각 지상
일반철골구조 티 100 글라스올판넬지붕
일반상업지역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
1층 352㎡(일반음식점)
4. 평택시 M 대 366㎡
5. 평택시 N 대 672㎡. 끝.

1) 원고들은 애초 ‘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8.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’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일부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였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위 피보전채권액을 ‘57,630,136원(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6. 28.부터 2021. 7. 15.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)’으로 감축하고 별지 목록 제1, 2, 4,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일부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로 삼고,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.

2)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별지 목록(제1 내지 4항의 부동산만 기재)은 착오기재로 보인다.